

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



경 찰 청

한 사람
대한민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안전속도 5030 시행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개정 2019.4.17., 시행 2021.4.17.)과 관련됩니다.
3. 위와 관련, 오는 '21.4.17.(토) 부터 시행되는 도시부 제한속도 제도에 관하여 불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소속 회원사가 열람할 수 있도록 널리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속도 5030 이란?	
--	----------------------	--

연구 및 해외사례를 토대로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시부의 보조간선도로 등 제한속도를 50km/h로** 생활도로나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별 보호요구 지역은 30km/h로**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제도입니다.

개정 전			개정 후			
도로 종류		속도	도로 종류		'속도	
일반도로	편도 1차로	60	일반도로	도심부	원칙	50
	편도 2차로 이상	80		시도경찰청 필요시 지정		60
			기타	편도 1차로		60
	편도 2차로 이상			80		
각종 보호구역		30~50	각종 보호구역		30~50	
자동차전용도로		30~90	개정 전과 같음			
고속도로	편도 1차로					50~80
	편도 2차로	일반				50~100
		화물(1.5톤▲) 특수 위험물 건설기계				50~80
		일반				50~120
	경찰청 별도 고시 구간	화물(1.5톤▲) 특수 위험물 건설기계				50~90
요금소 주변		30				

※ 표 범위 내에서 시·도경찰청장은 교통안전표지로 제한속도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상기후 시에는 최고속도의 20~50% 감속

- 붙임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2. 경찰청 교통국장 서한문 1부. 끝.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를 말한다)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 이내</u></p>	<p>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 -----.</p> <p>1. <u>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를 말한다)</u></p> <p style="margin-left: 2em;">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p> <p style="margin-left: 2em;">나. <u>가목 외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 이내</u></p>

2.·3. (생 략)

② ~ ③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존경하는 전국 운수업체 종사자 여러분!

먼저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 위기상황에서도 안전운행을 위해 힘쓰고 계신 전국 운수업체 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3,081명)를 기록했습니다. 완만하던 사망자 감소 추세도 2018년부터 매년 10% 안팎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어 오랜기간 우리가 들어왔던 교통 후진국이라는 오명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OECD 36개 국가 중 29위에 머물 정도로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사업용 차량의 경우도 다행히 지속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열악한 운행여건 등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운수종사자 여러분들의 운행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수업체 종사자 여러분!

경찰청에서는 교통안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금년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국에서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전국토의 16%에 불과한 도시지역에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60%가 발생하고 있어, 도시부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기존

60km/h에서 50km/h으로 하향하고 이면도로는 30km/h로 제한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 정책입니다.

유럽 교통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추진한 정책으로 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OECD와 WHO에서도 교통사망 제로화를 위한 국가와 전체 구성원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는 ‘안전체계(safety system)’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수차례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서울, 부산 등 도시지역의 90% 이상에서 이미 제한속도가 하향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4월 17일이 되면 개정된 법령의 시행과 함께 전국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도시지역에서는 별도 속도표지판이 없더라도 제한속도 50km/h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5030 정책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교통안전은 국가 뿐 아니라 구성원 전체의 책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변화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과 가족이겠지만 그다음은 이웃인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교통안전의 지킴이로서 지금껏 그래왔듯이 늘 이웃과 함께 하시면서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안전한 일상을 기원하겠습니다.

경찰청 교통국장 치안감 이 충 호 드림